

#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議案 番號	633
----------	-----

發議年月日：1997. 7. 29.  
發議者：朴相千·李廷武  
南宮鎮·具天書  
鞠瑲根·李義翊  
柳宣浩·邊雄田  
辛基南·朴信遠  
韓英愛·李在善  
丁世均·朴九溢  
李基文 議員  
外 108 人

## 1. 修正理由

○.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1997. 7. 23, 內務委員長 提案)은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중 종전 申請期間내에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못하였거나 신청자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내어 탈락한 자를 救濟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改正法律案은 종전 申請期間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要件을 붙이고, 신청자중 증거자료를 제대로 못낸자에 대하여는 “死亡 또는 行方不明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要件을 붙여, 사실상 아무런 救濟效果가 없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制約을 가하고 있다.

○.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案이 통과되었을 當時에, 상당수의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들은 光州民主化運動에 대한 救濟가 ‘賠償’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補償’으로 표현되어 그들의 공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補償申請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자중 상당수는 死亡 또는 行方不明으로 인하여 제대로 증거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申請期間이 30日으로써 너무 단기간이고 법적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엄격한 要件을 붙여두면 사실상 救濟받을 사람이 거의 없게되어 이 法律을 改正하려는 目的이 달성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 國民代表機關인 國會가 民意를 수렴하여 法을 만들면서 겉으로는 民意를 수렴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效果가 없게 法을 만든다는 것은 國會가 가야할 바른 길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改正法律案을 제출한 目的을 살리고자 이 修正案을 제안하는 바이다.

## 2. 修正 主要骨子

가. 종전 申請期間중에 補償金 등을 申請하지 못한 者중 改正法律案에 의하여 補償申請을 하려는 者에 대하여 要件으로 붙인 “당사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文句를 削除함. (修正案 第8條第3項)

나. 종전 申請期間중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補償審議委員會에서 탈락한 者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補償申請을 하려는 者에 대하여 要件으로 붙인 “死亡 또는 行方不明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라는 文句를 削除함. (修正案 第8條第3項)

法律 第 號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8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 申請期間중에 補償金 등을 신  
청하지 못한 자와 종전 申請期間중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  
해 補償審議委員會에서 탈락한 자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일이내에 補償金 등을 신청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